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2. 18.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2월 3일
-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2. 1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의 주체가 위원회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2024.2.6.)된 바,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 풍토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2조의2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와 제27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과 동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도 함께 안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의3에서는 동법 제26조의3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 신청자 선정을 위한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 결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2에서는 동법 제6조2호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의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수혜 가능한 정책을 안내하는 규정 신설은 상위법령에 부합함.
- 또한 공익신고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470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우경란, 유승용, 양송이,  
김지연, 최봉희, 이성수,  
차인영 의원(7인)

## 1.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과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으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lt;신 설&gt;</p> | <p><u>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과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u></p> |
| <p>&lt;신 설&gt;</p> | <p><u>제12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u></p>                                                                                                                                                                                                                                                                                                                                                                                                                |

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으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  
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  
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  
3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